

-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- 경기도 「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」 모집 **수정공고**

경기도일자리재단 공고 제2024-038호와 **관련**,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.

2024년 3월 21일

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

I 모집 개요

- 신청기간 : **2024. 4. 1.(월) 09:00 ~ 4. 8.(월) 18:00**
 - 모집인원 : **2,700명**
 - 신청방법 :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<https://youth.jobaba.net>) 온라인 신청
 - 지원대상
 - **만19세 이상 ~ 만39세 이하*** 경기도 거주자
 - *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(최고 3년)
 - 경기도 내 **중소기업**(주 36시간 이상 근무) 재직 4대 보험 가입자
 - ※ 국가·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공기업 재직자 제외
- ◆ 공공기관 범위 : 정부 공공기관, 지자체 출자·출연기관, 지방공기업 등

※ 관련 규정(기획재정부, 행정안전부 고시 기준)

 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공공기관)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(적용 범위)
 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적용 대상 등)
- **건강보험료 3개월**(2024년 1월, 2월, 3월) **평균 118,500원**(월 과세급여 334만원)이하 납부자
 - 지원내용 : 3개월 단위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
 - 지급방법 : 3개월 단위 자격요건 검증 후 **지역화폐** 지급
 - ※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자산 형성 지원사업으로 분류

II

신청 자격

○ 아래 ①~③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[접수기준일(2024.4.1.)기준]

① 연 령 : 접수기준일(2024. 4. 1.) 기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* 청년

* **1984. 4. 2. ~ 2005. 4. 1. 출생자**

*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(최고 3년)

② 거 주 지 : 접수기준일(2024.4.1.)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

③ 근무조건

-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*에 주 36시간 이상** 근무하고 3개월***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

*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소기업(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제외)

**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
(단,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.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)

***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이 **2024. 1. 1. 이전(1월 1일 포함)**인 경우 해당
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**직장건강보험료 3개월(2024년 1월, 2월, 3월) 평균 118,500원(월 과세급여 334만원) 이하인 자** ※'24년 기준중위소득 150% 반영

-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가입 필수

<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 >

■ 본 사업 참여자격(연령, 거주지, 근무조건) 미충족자

■ 접수기준일('24.04.01.) 기준 1년 이내 아래 ①~④에 해당하는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자*

* 단, 본 사업 접수기준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

①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

· 청년내일채움공제 /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

·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/ 청년내일저축계좌

· 취업성공수당(국민취업지원제도 I, II유형) 등

② 청년 노동자 통장(舊 일하는 청년 통장)

· 경기복지재단(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)

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청년연금)

④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청년복지포인트)

■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舊 청년 마이스터 통장) 참여 이력이 있는 자

■ 국가근로장학생 / 해외파견자

■ 휴직자(육아휴직 포함) / 병역 복무 이행자(현역, 사회복무요원, 전문연구요원, 산업기능요원 등)

※ (유의사항) 선정된 후 중복 참여 제한 사업 참여이력 및 참여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선정 결과 무효 처리 및 환수 조치되오니, 사업 신청 전 신청 사업과 중복 제한되는 사업에 참여 중인지 면밀히 확인 부탁드립니다.

III

신청 방법

< 신청 시 유의사항 >

-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(PC 또는 Mobile)
- 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(누락, 식별불가)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불가
-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) 신청 매뉴얼 참조(홈페이지-자료실)

○ 신청기간 : 2024. 4. 1.(월) 09:00 ~ 4. 8.(월) 18:00

※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, 마감일 4. 8.(월)은 18: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(최종제출)하여 완료해야 함

○ 신청방법

-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(<https://youth.jobaba.net>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(참여접수 -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)

※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: ☎1577-0014(평일 09:00 ~ 18:00)

※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가능(미동의할 경우 일반 접수 페이지에서 신청)

○ 제출서류(온라인으로 파일 첨부)

※ 주민등록초본,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근무확인서는 접수기준일(2024.4.1.)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

【기본제출서류 8종】 - 공공 마이데이터 미동의 신청자

- ① 신청서(신청화면에서 작성)
-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(신청화면에서 작성)
- ③ [사업주 직인 발급]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
(별도서식 -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)
- ④ 주민등록초본(주민등록번호 뒷자리,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, 주소변동(최근 5년)내역, 병역사항 전체 포함) (읍면동 주민센터, 정부24)
※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, 주소변동,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, 초본 제출 필수
- ⑤ [사업주 발급] 사업자등록증 사본(근무처) ※'24.4.1. 이전 발급분 가능
-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(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)
-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)*기준 3개월 : 2024년 1월, 2월, 3월
- ⑧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)*기준 3개월 : 2024년 1월 2월 3월
- ⑨ [필요시 사업주 발급]중소기업확인서 (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)

【기본제출서류 5종】 -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신청자

- ① 신청서(신청화면에서 작성)
-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(신청화면에서 작성)
- ③ [사업주 직인 발급]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
(별도서식 -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)
- ④ [사업주 발급] 사업자등록증 사본(근무처) ※'24.4.1. 이전 발급분 가능
- ⑤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(접수일 전 3개월*) 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)
* 기준 3개월 : 2024년 1월, 2월, 3월
- ⑥ [필요시 사업주 발급]중소기업확인서 (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)
※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초본,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
※ 단, 신청시 마이데이터 오류가 발생한 채로 제출한 경우 선정 제외됨에 따라, 신청서 최종 제출전 반드시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이 필요하며, 오류가 있을 경우 콜센터 (1577-0014)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IV 선정 기준

○ (필수요건) 접수 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

- 접수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 (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포함)
- 신청 자격 적격 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
※ 거주지 충족 여부, 3개월 이상 재직, 중소기업 근무 여부,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여부, 참여 제외자 여부 확인 등

○ (선정기준) 3개월(2024년 1월, 2월, 3월)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

○ (동점자 처리) 동점자 발생시

- ① 現 직장 장기 재직자 순
- ② 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

V 대상자 선정

○ 대상자 발표 : 2024. 5. 9.(목) 예정

-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(<https://youth.jobaba.net>)에 게재
※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VI

유의사항

- 공고문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공고문 내용에 대한 확인 및 동의 여부를 사업 참여 시 확인하고 있습니다.
- 「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」은 **온라인 신청·접수**이며,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임의로 편집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※ 임의로 편집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서류보완요청과 별도의 고지 없이 부적격 처리됩니다.
- 신청기간 마감 이후 신청서류를 검증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미제출·오제출 및 오작성 서류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보완 제출 기한은 3일 내외(근무일 기준)로 세부일정은 서류 보완 대상자 발표 시 안내 드립니다.
 - ※ 다만, 보완기간 마감 전까지 **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(임시저장 등)**의 경우 **제출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**, 신청서의 미제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 보완기간이 마감된 이후에는 이미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 및 변경이 불가하며, 추가 서류 제출 또한 불가합니다.
 - ※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**알림 문자 발신 번호는 1577-0014**이며, 수신 거부 시 이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,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,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금 환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대상자 선정 후, 통지한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 (**약정서 제출, 지역화폐 정보 입력 등**) 불이행시 자격 상실 처리됩니다.

- 선정자 결과 발표 후 기 선정된 참여자가 사업을 자진 포기하거나 사전 절차를 미이행하는 등의 사유로 선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적격으로 확인된 차순위 신청자를 추가 선정합니다.
 - ※ 추가 선정자의 첫 지급분을 제외한 지역화폐 지급시기와 자격조건 유지검증 일정의 경우 같은 차수 최초 선정자들의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됨
-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불가합니다.
- 사업 참여(선정 및 등록) 이후에는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(청년내일채움공제,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, 청년내일저축계좌 등) 참여가 영구히 불가할 수 있으며, 본 사업 참여 이력은 삭제되지 않습니다. 타 유사 사업의 사업별 규정이 상이할 수 있어 관련 내용은 타 유사 사업의 운영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경기도 「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」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되어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중 경기도 「청년 복지포인트」 및 경기도 「청년 노동자 통장」 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.
 - ※ '24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」 모집에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될 경우 '24년 청년 복지포인트」 모집 및 '24년 청년 노동자 통장」 신규모집에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.
(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」 사업을 중도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일로부터 1년 이후 청년 복지포인트」 및 청년 노동자 통장」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)
-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, 사업장 규모,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검증을 해야 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경기도일자리재단(청년 노동자 지원사업) 콜센터 : ☎ 1577-0014
 -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(<https://youth.jobaba.net>) 내 신청 매뉴얼 및 FAQ 참조